감사규정 전부개정(안)

(감사팀, '20.04.20.)

□ 목 적

○ 감사규정이 2013년 본문 일부 내용에 대한 개정 이후 현행「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」반영 필요에 따라 감사규정 현행화를 위한 전부개정으로 감사직무 절차·범위·기준 등 개선

□ 개정근거

- ○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및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-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-4155(2019.09.23.)호, "'적극행정 추진방안' 협조 요청"

□ 주요 개선 내용

- 감사업무 직무수행의 독립
- 감사담당자의 자격 및 전문성
-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
-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 신청 및 절차 등
- 적극행정 면책기준 추가
- 기타 감사규정 전반 현행화

감 사 규 정

제정 2011. 07. 01.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 96호 전부개정 2020. 00. 00.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000호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, 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공기업・준정부 기관 감사 운영규정」에 따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(이하 "개발원"이라 한다)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개발원이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또는 제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- 1. 개발원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
- 2.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
- 3. 공직부조리, 진정 및 제보 사항 등에 대한 감사
- 4. 감사원,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(이하 "관계기관"이라 한다) 또는 개발원 원장(이하 "원장"이라 한다)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

제4조(감사의 구분) 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종합감사 : 본원 각 부서 및 지역본부(지사 포함)(이하 "감사대상부서"라 한다)의 주기능·주임 무 및 회계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·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
- 2. 특정감사: 특정한 업무, 사업 및 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 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
- 3. 재무감사 : 예산의 활용·관리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 시하는 감사
- 4. 성과감사 : 특정한 정책·사업·조직 및 기능에 대한 경제성·능율성 및 효과성의 검토·분석 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
- 5. 복무감사 : 감사대상부서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, 비위사실 및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
- 6. 일상감사 : 주요업무 및 회계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감사
- 7. 특별감사 : 특정업무 또는 특정 사안에 대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
- ② 감사는 제1항의 감사종류별 감사대상업무의 범위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

로 정할 수 있다.

- **제5조(감사의 방법)** 감사는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실지감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
- **제6조(종합감사의 주기)** 자체 감사대상부서에 대한 종합감사의 주기는 2년 또는 3년으로 한다. 다만, 관계기관에 의한 실지감사부서 또는 신설부서에 대하여는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.

제2장 감사인과 감사담당부서

- 제7조(직무독립의 원칙) ① 감사 및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(이하 "감사인" 이라 한다)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,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 - ②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, 감사의 독립성 저해요인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감사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감사인이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친족관계 등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로 인해 감사계획,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의 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
 - 2. 감사인이 감사대상업무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 · 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
 -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독립성 저해요인이 있는 경우, 그 저해가 개발원 내부에서 비롯된 때에는 원장에게 그 저해요인의 제거를 요구하거나 이사회에 보고하고, 외부에서 비롯된 때에는 그 제거를 위해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협조 또는 지원요청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1. 감사범위, 감사절차와 방법, 감사시기와 기간, 감사증거 수집, 감사결과 처리를 제한하는 외부의 청탁·압력·유혹이나 간섭
 - 2. 그 밖에 감사인의 업무수행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인력, 예산, 정보 등 감사자원에 관한 외부의 부당한 간여
- 제8조(업무자세) ① 감사인은 기관운영의 감시자로서의 책무성을 인식하고 공정성·성실성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.
 - ② 감사인은 직무수행에 있어 관행에 안주하지 말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시정하며, 복무에 있어서는 개발원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감사대상부서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.
- 제9조(의견진술 및 보고 등) ① 감사는 「정관」제21조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 - ② 감사는 임원이 관계법령 및 제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

되는 경우에는 유보 또는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개발원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- 제10조(의무와 책임) ① 감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와 의무를 다하고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 - ② 감사인은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③ 감사인은 그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발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,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대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- 제11조(감사인의 권한)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.
 - 1. 관계서류, 장부, 증빙서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
 - 2.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(확인서, 질문서, 문답서 등 징구)
 - 3. 창고·금고·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및 조사
 - 4.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및 조회
 - 5. 전산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
 - 6.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
 -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권한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범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한다.
- 제12조(교육계획 수립 등) ① 감사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자질과 감사기술의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 - ② 감사인은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규를 숙지하고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 및 이론의 연구와 감사기술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 감사는 감사인의 연간 감사전문교육 이수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, 원장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연간 감사전문교육을 원활히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.
- 제13조(감사담당부서) ① 원장은 감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「직제규정」이 정하는 바에 의해 감사담당부서(이하 "감사담당부서"이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원장은 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조직 및 인원, 예산 등을 확보하여 야 한다.
 - ③ 감사는 원장에게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④ 감사는 감사업무 수행에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직원의 조력을 구하거나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·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4조(감사담당자의 자격) ① 감사담당부서의 직원(이하 "감사담당자"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직원으로 임용한다.
 - 1. 개발원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사람
 - 2. 감사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

- 3.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
- 4. 기타 감사가 감사담당자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담사담당자로 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1. 「임직원 행동강령」 위반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- 2. 「인사규정」 제19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
- 3. 그 밖에 감사가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사람
- 제15조(감사담당자에 대한 대우) ① 원장은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사수당 및 감사활동 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- ② 원장은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평정기준을 별도로 운영하거나 인사가점 부여 등 인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. 다만, 근무평정 시 상위 평정비율에 대하여 1.5배를 초과할 수 없고 인사가점 부여 시 초과경력 기간에 대하여 동일기간 경력가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.
 - ③ 원장은 감사담당자로서 3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(근무부서 등)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- **제16조(감사담당자의 보직 및 신분보장)** ① 감사담당자의 보직 및 전보는 사전에 감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
 - ② 감사담당자는 전문성 확보 등 그 직무수행의 특성상 3년 이상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조직개편이나 개발원 운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.
 - ③ 감사담당자는 법령 또는 개발원의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 한다.
- 제17조(감사담당자의 행동규범) 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1. 개발원의 주인은 국민임을 인식하고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야 한다.
 - 2. 기관 이기주의 및 구성원의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 - 3. 복무에 있어 타 직원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4. 감사대상부서 및 대상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5.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장 감사업무 절차

- 제18조(연간감사계획) ① 감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당해 연도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1. 감사사항
 - 2.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

- 3.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
- 4. 감사의 범위
- 5.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
- 6.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
- ② 감사는 연간감사계획을 작성한 후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 연간감사계획상의 감사일정 변경 및 계획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원장 및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9조(감사의 사전준비) ① 감사인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·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
 - 1. 관계법령 및 개발원 제규정
 - 2. 감사대상부서의 기능·조직·인력·예산 등 일반현황
 - 3. 주요 업무계획 및 현재의 활동실적
 - 4.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
 - 5. 그 밖에 민원, 감사정보,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
 - ② 감사인은 감사계획의 수립 또는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 선정의 적정성,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- 1.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
 - 2.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 조사
 - ③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예비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.
 - ④ 감사인은 감사의 사전 준비를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계획 또는 감사방법에 대한 자문 또는 인력지원을 요청하거나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.
- 제20조(감사세부계획 수립 및 실시 기준) ① 감사는 감사실시 전에 감사목적·감사 착안사항·감사기 간, 감사반 구성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감사인은 다음 각 호를 감사의 기준으로 적용한다.
 - 1. 합법성 및 합리성
 - 2. 경제성, 능률성 및 효과성
 - 3. 형평성, 공정성 및 객관성
 - 4. 기타 합리적인 준거
- 제21조(감사의 사전예고) ① 감사는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종합감사는 감사실시 7일전에, 특별감사, 재무감사 및 특정감사는 감사실시 전에 원장 및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 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- ② 감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원장 및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

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원장 및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

제22조(감사결과 보고)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결 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 및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일 내에 보고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감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.

제23조(감사보고서 작성원칙)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- 1. 완전성: 감사가 수행한 감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
- 2. 간결성: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작성
- 3. 논리성: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
- 4. 정확성 : 수집된 증거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작성하고 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
- 5. 공정성 : 문제점을 과장하지 않고 편향되지 않은 시각으로 작성
- 6. 적시성: 감사결과는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부서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기에 작성
- 제24조(감사결과 처분요구) ①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·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원장 또는 감사대상부서의 장(관련자 포함)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따라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.
 - 1. 변상: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2. 징계: 개발원의 정관 및 제규정, 중요 방침 등을 위반하여 인사규정상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
 - 3. 경고: 법령, 규정, 지시위반 사항으로서 기한이 경과되어 이를 시정할 수 없거나 시정의 대상 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위법부당 행위가 중요시 되나 그 정상이 참작되어 징계에 부의 함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4. 주의 :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
 - 5. 시정 :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·회수·환급·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6. 개선: 감사결과 법령상·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
 - 7. 권고: 감사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원장 또는 감사대상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
 - 8. 통보: 감사결과 확인된 비위사실이나 위법·부당사항으로 다른 처분(요구)으로는 조치하기 부적합하나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9. 현지조치: 감사결과 사안이 경미한 경우 또는 업무처리중의 사소한 오류에 대하여 현지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
 - ② 감사는 징계처분을 요구할 때에 그 종류(중징계, 경징계로 구분)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,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를 지정하고 변상액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- 제25조(가중처분) 감사는 감사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.
 - 1.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2년 이내(1회의 경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)에 2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경고에 해당하는 사안이 적발된 경우
 - 2.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2년 이내(1회의 주의처분을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)에 3회 이상 주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주의에 해당하는 사안이 적발된 경우
 - 3. 감사결과 처분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간 이행하지 않을 경우
- 제26조(고발) ① 감사는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 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고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할 때에는 감사 명의로 고발하고 추후 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
- 제27조(감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) 감사는 제11조에 의한 감사자료 제출 및 답변 요구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또는 제28조제2항의 재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여 원장에게 관계자의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- 제28조(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) ① 원장 또는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제24조에 따른 감사의처분요구를 받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,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한다. 다만, 처리기간 내에 처분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조치요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 및 처리예정일을 포함한 처리계획을 통보하여야하며,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. ② 감사는 제1항의 본문에 따른 조치결과가 미흡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으로 1개월 이내에 원장 또는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재처분 요구를 할 수 있다.

제4장 감사결과 사후관리

- 제29조(감사결과 조치 확인) 감사는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현지확인·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, 다음 감사 시에 그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제30조(재심의 신청 등) ①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에게 [별지 제1호 서식]에 의한 재심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.
 - ②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 - ③ 감사는 재심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31조에 의한 재심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제25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고,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요구를

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.

- 1. 재심의 신청대상자가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
- 2.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
- 3.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 한 사안인 경우
- 4. 행정심판(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특별 행정심판을 포함한다) 심사청구,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
- 5. 그 밖의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
- **제31조(재심의 절차)** ① 감사는 재심의신청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 위원회(이하 "재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하여야 한다.
 - ② 재심의위원회는 2급 이상의 소속 직원과 청렴옴부즈만 등 외부위원으로 3인 이상 5인 이 내로 구성하며, 간사는 감사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.
 - ③ 재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재심의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위원장은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 -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,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재심의위원회에 참석토록 하여 진술을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⑤ 감사는 재심의신청사항에 대하여 재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각하·기각·인용·부분인용 등을 판정하고 [별지 제2호 서식]의 재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제32조(처분의 직권 재심의) ① 감사는 처분 요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. 다만, 증거서류의 오류·누락 등으로 인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 재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사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.
 - ② 감사는 제1항에 따라 처분사항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분을 변경ㆍ시행하여야 한다.

제5장 보칙

- 제33조(적극행정에 대한 면책) ① 감사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(이하 "적극행정"이라 한다)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구체적인 기준, 운영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장이 따로 정한다.
- **제34조(사고보고)** ① 본원 각 부서 및 지역본부(지사 포함)의 장은 소관 업무 수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 및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- 1.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
- 2.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고
- 3.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
- 4. 현금・유가증권・기타 망실 또는 훼손 사고
- 5. 기타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위법 부당사항
- ② 감사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경위를 밝혀 지체 없이 원장에게 통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**제35조(연간감사보고서)** ①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년도 감사결과를 종합한 연간감 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,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② 연간감사보고서는 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하고 개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하여야 한다.
- 제36조(관계기관 제출 문서 및 자료의 통보) 본원 각 부서 및 지역본부(지사 포함)의 장은 감사업무 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제출되는 문서 또는 자료를 감사담당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37조(대외보고서의 사전검토)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기관에 제출하는 주요 회계(결산)보고는 감사의 사전검토를 거쳐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38조(경영공시 확인) 감사는 「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」에 따라 내·외부 경영공시 내용에 관한 적정성과 공시과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제39조(문서의 명의) 이 규정에 의하여 작성 · 제출하는 보고서는 감사의 명의로 한다.
- 제40조(시행규칙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11.11. 1>

이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13.02.20>

이 규정은 2013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19.8.14.>

이 규정은 원장 결재일로부터 시행한다.

재심의 신청서

1. 신청인	부서		직급(직명)			
	성명		전화번호			
2. 재심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의 내용						
3. 재심의 신청 그 이유	J의 취지 및					
4. 감사결과를	통보받은 날					
5. 대리인의 성	성명 및 주소					
「감사규정」및「감사규정 시행규칙」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.						
	2	0 년 월	일			
			신청인		(인)	
 첨부서류 : 표	지 포함	매.				
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감사(담당부서장) 귀중						

재심의 결정서

□ 감사결과 지적사항 제목(건별)	
○ 청 구 인 :	
○ 관계기관 :	
○ 원 처 분 :	
○ 주 문:	
○ 재심의신청 이유	
1. 원 처분의 요지	
가.	
2. 재심의신청 내용	
가.	
나.	
3. 판 단	
가. 재심의신청 내용에 대한 판단결과	
O	
4. 결 론	
가. 기각, 인용, 각하 등 심의 결정 내용 기재	
00 14 01 01	
20 년 월 일	
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감사(담당부서장)	(인)
	(🗀 /